

1996년 5월 22일 부카레스트에서 각서교환
1997년 5월 19일 발효

(번역문)

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간의
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

루마니아측 제안각서

각 하,

본인은 부카레스트에서 1990년 8월 7일 서명되고 1994년 12월 30일 발효된 루마니아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을 언급하며 상기 협정 제2조, 제8조 및 제10조의 개정을 아래와 같이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.

1. 제2조(정의) 가항 (1)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“동산·부동산 및 저당권·유지권·질권 등 기타 모든 관련 권리“
2. 제2조 가항 (4)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“저작권, 특허권, 상표권, 산업설계, 거래비밀, 기술공정, 노우하우와 관련한 권리 등 지적재산권 및 영업권“
3. 제2조 라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“영역“이라 함은
 - (1) 루마니아에 관하여는, 국내법 및 국제법에 따라 루마니아가 주권,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영해 등 루마니아의 영토와 배타적 경제수역을 의미하며
 - (2) 대한민국에 관하여는,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등 국제법에 따라 대한민국이 주권, 주권적 권리, 관할권 및 기타 권리를 행사하는 영해 등 대한민국의 영토와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을 의미한다.
4. 제8조(일방 체약당사국과 타방체약국의 투자자간의 투자분쟁해결)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- “1. 투자의 수용 또는 국유화를 포함한 일방 체약당사국과 타방 체약당사국의 투자자간의 어떠한 분쟁도 가능한 한 분쟁당사자간에 우호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.
 2. 일방 체약당사국의 투자자는 투자가 행하여진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의거한 법적 구제조치를 이용할 수 있다.
 3. 모든 분쟁이 분쟁해결을 요청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체결 되지 못할 경우, 투자자는 자기의 결정에 의하여 동 분쟁의 체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에 회부할 수 있다.
 - 가. 1965년 3월 18일 워싱턴에서 체결된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해결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
 - 나. 분쟁당사자간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, 국제연합무역법 위원회의 중재규칙에 의하여 설립되는 특별중재재판소
 4. 분쟁당사자인 체약당사국은 투자분쟁절차 진행중 국가면제또는 투자자가 부분

또는 전 손실에 대하여 보험계약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로 결코
이의 제기를 하지 아니한다.“

5. 제10조(협정의 적용)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“이 협정은 협정 발효이전 타방 계약당사국의 투자자가 자국 법령에 따라 일방 체
약당사국에 행한 투자에도 적용된다. 그러나, 이 협정은 협정 발효이전 발생한 분쟁에는 적
용되지 아니한다.“

이 협정의 기타 규정은 계속하여 유효하다.

상기 개정안을 대한민국 정부가 수락한다면 본인은 또한 이 각서와 각하의 동일한 취지
의 회답각서가 부카레스트에서 1990년 8월 7일 서명되고 1994년 12월 30일 발효된 루마니아
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루마니아 정부
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.

이 합의는 계약당사국이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 완료를 통보한 마지막 날짜에 발효합니
다.

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.

마르셀 디누
루마니아 외무부차관

이 기 주
대한민국 외무부차관

우리측 회답각서

각 하,

본인은 다음과 같은 1996년 5월 22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.

“..... 루마니아 제안각서”

본인은 또한 상기 개정안을 대한민국 정부가 수락함을 각하께 알려드리며,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부카레스트에서 1990년 8월 7일 서명 되고 1994년 12월 30일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.

이 합의는 계약당사국이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 완료를 통보한 마지막 날자에 발효합니다.

각하께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.

이 기 주
대한민국 외무부차관

마르셀 디누
루마니아
외무부차관